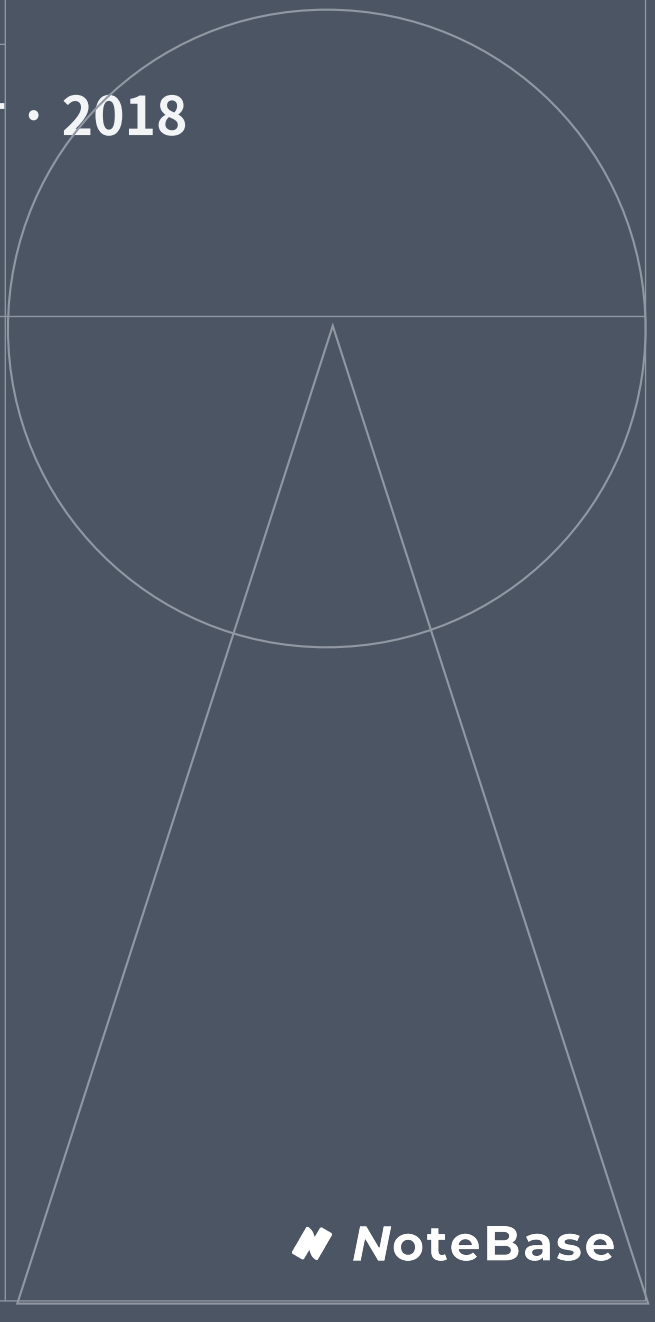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8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8

문 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나 미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나는 특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적절한 회계정책이라도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잘 설명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방법의 적절한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회계정책에는 금액을 인식·측정하는 방법뿐 아니라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분류 방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분류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로 표시한다. 따라서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② X: 수익이나 비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는 포괄손익계산서뿐 아니라 주석에도 적용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거나 드물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③ X: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 자료로 정당화할 수 없다**. 잘못된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 회계처리가 적절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한 회계정책 자체를 적절하게 고쳐야 한다.

④ O: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기준·관습·규칙 및 실무관행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분류 방법의 적절한 변경**도 회계정책 변경에 포함된다. 표시·분류 방법은 기간 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 성격의 중요한 변화 또는 재무제표 검토에 따라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된 구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비교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문 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검증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④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특성은 **비교가능성**이다. 검증가능성은 지식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고, 표현충실성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정보가 유용하려면 두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O: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측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 투입정보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고, 확인가치는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당기 매출액은 차기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 쓰이면서 과거 매출 예측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③ X: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특성은 **비교가능성**이므로, 선지의 '검증가능성'을 '비교가능성'으로 고쳐야 한다. 다른 기업의 정보나 같은 기업의 다른 기간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검증가능성은 지식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합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④ O: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관련 의사결정이 끝난 뒤에 제공되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 시점이 중요하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20×1년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 기초자산	₩500	○ 총수익	₩200
○ 기초부채	₩400	○ 총비용	₩120
○ 기말자산	₩700	○ 유상증자	₩20
○ 기말부채	₩ ?	○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50

① ₩500

② ₩520

③ ₩550

④ ₩57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과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배당을 빼서 구한다. 기말자본이 150원이므로, 기말자산 700원에서 이를 차감한 **기말부채는 550원**이다.

계산 과정

기초자본: 회계등식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500원에서 기초부채 400원을 뺀 100원이다.

당기순이익: 총수익 200원에서 총비용 120원을 빼면 80원이다. 이 이익은 당기에 영업성과로 늘어난 자본을 뜻한다.

기말자본: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 80원과 유상증자 20원을 더하고 현금배당 50원을 뺀다. 유상증자는 주주의 출자로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자본을 줄인다. 두 거래는 **수익·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말자본은 100 + 80 + 20 − 50 = 150원이다.

기말부채: 기말에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 기말자산에서 **기말자본을 차감**한다. 기말부채는 700 − 150 = 55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한국은 20×1년 10월 1일에 기계장치를 ₩1,2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에 취득하고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20×2년말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① 감가상각비 ₩375,000 감가상각누계액 ₩475,000

② 감가상각비 ₩375,000 감가상각누계액 ₩570,000

③ 감가상각비 ₩450,000 감가상각누계액 ₩475,000

④ 감가상각비 ₩450,000 감가상각누계액 ₩57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2년은 **첫 사용연도의 남은 9개월과 두 번째 사용연도의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에 따라 당기 감가상각비는 375,000원이며, 전기 감가상각비 100,000원을 더한 감가상각누계액은 475,000원이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상각률: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1,200,000 − 200,000 = 1,0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은 이 금액에 잔여내용연수의 비율을 곱하므로,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한다.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첫 사용연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 \times \frac{4}{10} = 400,000$원, 두 번째 사용연도는 $1,000,000 \times \frac{3}{10} = 300,000$원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10월 1일 취득했으므로 연말까지 3개월분을 인식한다. $400,000 \times \frac{3}{12} = 100,000$원이며, 이 금액이 20×1년말 감가상각누계액이다.

20×2년 감가상각비: 상각률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는 때**에 바뀐다. 1~9월은 첫 사용연도에 속하므로 $400,000 \times \frac{9}{12} = 300,000$원, 10~12월은 두 번째 사용연도에 속하므로 $300,000 \times \frac{3}{12} = 75,000$원을 상각한다. 따라서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300,000 + 75,000 = 375,000원이다.

20×2년말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는 당기 비용인 반면,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 후 보고일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 + 375,000 = 475,000원이다.

감가상각비 375,000원과 감가상각누계액 475,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누락한 거래들이다. 이를 반영할 경우 20×1년도에 증가하는 당기순이익은?

◯ 토지 최초 재평가로 인한 기말 평가이익 ₩30,000
◯ 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15,000
◯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의 기말 평가이익 ₩14,000
◯ 주식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단, 주식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0,000

① ₩5,000
② ₩19,000
③ ₩29,000
④ ₩49,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토지 최초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이익에서 **즉시 비용 처리하는 주식 거래원가**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9,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누락한 거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에서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최초 재평가이익 30,000원: 토지의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한다. 따라서 토지와 자본은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이다.

염가매수차익 15,000원: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의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15,000원 증가한다.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14,000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토지의 재평가이익과 달리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14,000원 증가한다.

주식 취득 거래원가 10,000원: 이 주식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므로 거래원가를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감소한다.

당기이익 증가분은 15,000 + 14,000 = 29,000원이고, 여기에서 거래원가 10,000원을 차감한다.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0 + 15,000 + 14,000 − 10,000 = 19,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를 ₩48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채택하였다. 20×2년 말 그 기계에 손상징후가 있었으며, 이때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180,000, 사용가치는 ₩186,000으로 추정되었다. 20×3년 말 회수가능액이 ₩195,000으로 회복되었다면 옳지 않은 것은?

①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은 ₩288,000이다.

② 20×2년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102,000이다.

③ 20×3년 말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62,000이다.

④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71,00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까지만 허용된다. 20×3년 말 한도는 192,000원이므로, 환입 전 장부금액 124,000원과의 차액인 **68,000원**을 환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480,000-0}{5}=96,000$원이다. 20×1년 초 취득하여 20×2년 말까지 **2년간 감가상각**하므로,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은 $480,000-96,000\times2=288,000$원이다.

② O: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따라서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180,000원과 186,000원 중 큰 186,000원이다. 장부금액 288,000원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므로, 그 차이인 $288,000-186,000=102,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 후 장부금액은 186,000원이 된다.

③ O: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배분**하여 감가상각한다. 20×2년 말에는 5년 중 2년이 지났으므로 잔여내용연수는 3년이다.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20×3년 감가상각비는 $\frac{186,000-0}{3}=62,000$원이다. 이에 따라 20×3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186,000-62,000=124,000$원이다.

④ X: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이 없었다면 20×3년 말 장부금액은 $480,000-96,000\times3=192,000$원이다. 회수가능액 195,000원이 이 한도보다 크므로 장부금액은 192,000원까지만 회복시킨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액은 $192,000-124,000=68,000$원이다. 선지의 71,000원은 $195,000-124,000$으로 계산하여 환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제품은 제1공정을 거쳐 제2공정에서 최종 완성되며, 제2공정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2공정에서 직접재료가 가공비완성도 50% 시점에서 투입된다면, 직접재료비와 가공비 당기작업량의 완성품환산량은?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일하게 발생하며, 제조공정의 공손·감손은 없다)

	물량단위(개)	가공비완성도
기초재공품	500	30 %
전공정대체량	5,500	
당기완성량	?	
기말재공품	200	30 %

①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개): 5,300,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개): 5,300

②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개): 5,800,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개): 5,650

③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개): 5,800,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개): 5,710

④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개): 5,800,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개): 5,8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한다. 직접재료는 가공완성도 50%에서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는 당기에 전량 투입되고, 기말재공품에는 아직 투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은 5,800개, 전기 작업분을 제외한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5,71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완성품환산량은 수행한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작업분을 제외**하고, 기초재공품을 완성하는 당기 작업량·당기 투입 후 완성한 작업량·기말재공품의 당기 작업량을 합한다.

물량 흐름: 표의 기초재공품은 500개, 제1공정에서 넘어온 전공정대체량은 5,500개, 기말재공품은 200개이다. 공손·감손이 없으므로 당기완성량은 500 + 5,500 − 200 = 5,800개이다. 선입선출법상 기초재공품 500개가 먼저 완성되므로, 당기에 제2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수량은 5,800 − 500 = 5,300개이다.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는 **가공완성도 50%에 도달할 때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은 가공완성도가 30%여서 전기에는 직접재료가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완성하는 당기에 500개 전부에 재료가 투입된다. 당기 투입·완성품 5,300개에도 전량 투입되지만, 가공완성도 30%인 기말재공품 200개에는 아직 투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재료비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500 + 5,300 + 0 = 5,800개이다.

가공비 완성품환산량: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일하게 발생하므로 각 수량에 **당기에 가공한 비율**을 곱한다. 기초재공품은 전기에 30%까지 가공했으므로 당기에는 나머지 70%만 가공하며, 그 환산량은 500 × (100% − 30%) = 350개이다. 당기 투입·완성품의 환산량은 5,300개이고,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은 200 × 30% = 60개이다. 따라서 가공비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350 + 5,300 + 60 = 5,710개이다.

직접재료비 5,800개와 가공비 5,710개의 조합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 × 1년 초 ₩720,000에 구축물을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상각)하였으며,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년 초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124,180으로 추정되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한 할인율이 1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20×1년 초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844,180이다.

②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전입액(또는 이자비용)은 ₩12,418이다.

③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136,598이다.

④ 20×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156,418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상각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164,836원과 이자비용 12,418원을 합하면 비용 총액은 **177,254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축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복구의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따라서 20×1년 초 취득원가는 720,000 + 124,180 = 844,180원이다. 복구비용 124,180원을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복구충당부채는 미래 복구지출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시간이 지나 복구시점이 가까워지면 할인효과가 줄어 부채가 증가하며, 이 증가액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0×1년의 복구충당부채전입액(또는 이자비용)은 기초 부채 124,180원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124,180 × 10% = 12,418원이다.

③ O: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기초 부채에 당기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124,180 + 12,418 = 136,598원이다. 이는 연말에 남아 있는 부채 잔액이며, 당기에 새로 인식하는 비용 12,418원과 구별한다.

④ X: 20×1년 비용 총액은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구한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초에 취득하였으므로 1년분 감가상각비는 $\frac{844,180 - 20,000}{5} = 164,836$원이다. 여기에 이자비용 12,418원을 더하면 164,836 + 12,418 = 177,254원이므로, 선지의 156,418원은 177,254원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9.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는? (단, 제시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②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③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받았다.

④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 취득액은 **자본 차감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지급액만큼 현금과 자본총액이 함께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이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증가하거나 자산의 구성만 바뀌면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① 기계장치의 외상 구입: 기계장치라는 자산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자산 증가액과 부채 증가액이 같으므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② 자기주식의 현금 구입: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취득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현금이 감소하고 자기주식이라는 자본 차감 항목이 증가하므로, 부채의 변동 없이 자본총액이 지급액만큼 감소한다.

③ 미래 용역 대가의 선수: 현금을 받았지만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아니라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한다. 현금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므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④ 외상판매대금의 전액 회수: 현금이 증가하는 만큼 매출채권이 감소한다. 이미 발생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새로운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구성만 바뀐다**. 자산총액과 부채가 변하지 않으므로 자본총액도 변하지 않는다.

이 중 자본총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는 ②의 자기주식 현금 구입이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 실제 직접노동시간 7,000시간
◯ 표준 직접노동시간 8,000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3,500(불리)
◯ 실제 노무원가 총액 ₩24,500

① ₩3,000(유리)
② ₩3,000(불리)
③ ₩4,000(유리)
④ ₩4,000(불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준임률은 시간당 3원이며, 실제 직접노동시간은 표준보다 **1,000시간 적다**. 절약한 시간을 표준임률로 평가하므로 능률차이는 **3,000원 유리**이다.

계산 과정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동시간과 실제 투입시간의 차이를 **표준임률**로 평가한 금액이다.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섞이지 않도록 실제임률을 사용하지 않는다.

1. 실제 시간에 대한 표준임률 적용액: 임률차이 3,500원 불리는 실제 7,000시간에 표준임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노무원가가 3,500원 더 컸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 시간에 표준임률을 적용한 금액은 24,500 − 3,500 = 21,000원이다.

2. 표준임률 계산: 21,000원은 **실제 7,000시간**에 대응하는 금액이므로, 표준임률은 $\frac{21,000}{7,000}$ = 3원/시간이다.

3. 능률차이 계산: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이므로, (7,000 − 8,000) × 3 = −3,000원이다. 실제 투입시간이 표준보다 1,000시간 적어 표준임률 기준으로 원가를 절약했으므로 **유리한 차이**이다.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3,000원 유리이며,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은 따르지 않는다.

④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제외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정하도록 한 중요성의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정한다. 중요성의 원칙은 모든 항목을 똑같이 세분하여 처리하기보다,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표시 방법을 정한다는 뜻이다.

② X: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자산과 부채 또는 순자산을 상계하여 전부나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할 수 없다(제8조제2항). 상계하여 차액만 표시하면 보유한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 등의 규모를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뿐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도 따라야 한다**(제3조제3항). 회계원칙의 적용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회계관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관습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습이어야 한다.

④ X: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된다(제5조제1항). 주석은 회계정책이나 세부사항 등 본문의 금액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여 재무제표의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주석은 제외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현행 규칙은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로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주석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NoteBase

문 12. 신설법인인 (주)한국의 기말 제품재고는 1,000개, 기말 재공품 재고는 없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변동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공헌이익은?

◯ 판매량 4,000개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생산량 5,000개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총 고정제조간접비 ₩1,0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50
◯ 총 고정판매관리비 ₩800,000

① ₩1,000,000
② ₩1,250,000
③ ₩1,600,000
④ ₩2,0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250원이므로 판매량 4,000개에 대한 공헌이익은 1,0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공헌이익의 범위: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고정제조간접비 1,000,000원과 고정판매관리비 800,000원은 **공헌이익을 계산한 뒤** 영업이익을 구할 때 차감한다.

변동매출원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300원 + 직접노무원가 200원 + 변동제조간접원가 100원 = 600원이다. 신설법인이므로 기초재고가 없고, 생산량 5,000개 중 1,000개가 기말 제품재고로 남았다. 따라서 당기에 비용으로 차감하는 변동매출원가는 **판매량 4,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0개 × 600원 = 2,400,000원이다. 나머지 1,000개분 600,000원은 기말 제품재고에 포함된다.

변동판매관리비: 판매량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를 곱하므로 4,000개 × 150원 = 600,000원이다. 이는 제조원가는 아니지만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이므로 공헌이익 계산에서 차감한다.

공헌이익 계산: 매출액은 4,000개 × 1,000원 = 4,000,000원이다. 여기서 변동매출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공헌이익은 4,000,000원 − 2,4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의 사채를 ₩92,410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연간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며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94,730이다. 사채의 연간 액면이자율을 추정한 것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사채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9%이다)

① 5%

② 6%

③ 7%

④ 8%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채 장부금액의 증가액 2,320원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에서 이 상각액을 빼면 연간 현금 지급이자는 약 5,997원이므로, 액면금액 100,000원에 대한 **액면이자율은 약 6%**이다.

계산 과정

1. 이자비용 계산: 20×1년 1월 1일 발행하고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므로 첫해에는 1년분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유효이자율법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20×1년 이자비용은 92,410원 × 9% = 8,316.9원이다.

2. 현금 지급이자 역산: 할인발행한 사채는 이자비용 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처리하여 장부금액을 늘린다. 첫해 상각액은 기말 장부금액과 기초 장부금액의 차이인 94,730원 − 92,410원 = 2,320원이다. 따라서 **현금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에서 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8,316.9원 − 2,320원 = 5,996.9원이다.

3. 액면이자율 추정: 현금 지급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해 정하므로, 액면이자율은 현금 지급이자를 **액면금액 100,000원**으로 나누어 구한다. $\frac{5,996.9}{100,000} \times 100\% = 5.9969\%$이므로 가장 가까운 액면이자율은 6%이며,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신설법인인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805,000이며, 보통주 1주당 ₩2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주당 액면금액 ₩500), 우선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금액 ₩100, 배당률 10%)이다. 보통주의 주당 시가를 ₩4,000이라 할 때 옳은 것은? (단, 적립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은 ₩805이다.

② 보통주의 주가수익비율은 20%이다.

③ 보통주의 배당수익률은 5%이다.

④ 배당성향은 20%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을 주당 시가로 나눈 비율**이다. 보통주 주당배당금은 200원이고 시가는 4,000원이므로 배당수익률은 $\frac{200}{4,000} = 0.05 = 5\%$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우선주배당금은 $500 \times 100 \times 10\% = 5,000$원이므로,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은 $805,000 - 5,000 = 800,000$원이다. 제시된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를 적용하면 기본주당순이익은 $\frac{800,000}{1,000} = 800$원이다. 805원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다.

② X: 주가수익비율(PER)은 주당 시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지 나타낸다. 따라서 $\frac{4,000}{800} = 5$배이다. 반대로 주당순이익을 주당 시가로 나눈 $\frac{800}{4,000} = 0.20 = 20\%$는 **주가수익비율이 아니라 이익수익률**이다.

③ O: 배당수익률은 주식의 시장가격에 비해 현금배당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므로, 주당배당금을 **액면금액이 아닌 주당 시가**로 나눈다.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이 200원이고 시가가 4,000원이므로 $\frac{200}{4,000} = 0.05 = 5\%$이다.

④ X: 배당성향은 벌어들인 순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한 비율이다. 보통주 기준으로는 **주당배당금을 기본주당순이익으로** 나누므로 $\frac{200}{800} = 0.25 = 25\%$이다. 회사 전체의 총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기준에서도 보통주배당금 200원 × 1,000주 = 200,000원에 우선주배당금 5,000원을 더해야 한다. 이 경우 배당성향은 $\frac{205,000}{805,000} \approx 0.2547 = 25.47\%$로, 어느 기준에서도 20%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배당수익률이 5%라는 ③이다.

NoteBase

문 15. ㈜한국의 20×1년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연간 고정원가는 ₩190,000이다. 국내시장에서 단위당 ₩1,000에 300개를 판매할 계획이며, 남은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950에 판매가능하다. 20×1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제품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며 해외판매는 국내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500개

② 950개

③ 1,050개

④ 1,100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내 판매 300개의 공헌이익 120,000원으로 고정원가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고정원가 70,000원**은 해외 판매 200개의 공헌이익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의 총판매량은 **500개**이다.

계산 과정

시장별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는 데 쓰인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고정원가가 같아져** 이익이 0이 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두 시장 모두 600원이므로 국내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 − 600 = 400원, 해외는 950 − 600 = 350원이다.

국내 판매분의 고정원가 회수: 국내 판매계획 300개의 공헌이익은 300 × 400 = 120,000원이다. 이는 연간 고정원가 190,000원보다 작으므로 국내 판매만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외 판매로 추가 회수해야 할 **미회수 고정원가**는 190,000 − 120,000 = 70,000원이다.

필요한 해외 판매량: 해외 판매는 국내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국내 판매 300개를 유지한 채 부족한 공헌이익을 해외 판매로 확보한다. 해외에서는 1개당 350원의 공헌이익이 생기므로 필요한 해외 판매량은 $\frac{70,000}{350}$ = 200개이다.

총판매량: 국내 300개와 해외 200개를 합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300 + 200 = 500개로, ①의 500개에 해당한다. 이때 총공헌이익은 120,000 + 200 × 350 = 190,000원으로 고정원가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지방자치단체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조달수익으로 분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방식으로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한다.

④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창출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부채납으로 자산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부시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에 순자산의 증가로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조달한 수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는 **스스로 조달한 재원**이므로 자체조달수익으로 분류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② X: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은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를 **수익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기부채납방식으로 자산을 받으면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39조제1항에 따라 순자산변동표에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자산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가액이 모두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정부간이전수익은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이다. 재원의 출처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자체 과세권과 징수활동으로 마련한 자체조달수익과 구별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

④ O: 교환거래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수익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창출활동의 완료와 합리적인 금액 측정**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되면 인식한다. 재화·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만으로 인식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회계실체인 A부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할 자산의 장부가액은?

◯ 국가회계실체인 B부가 ₩200,000,000으로 계상하고 있던 토지를 관리전환 받아 공정가액 ₩300,000,000을 지급하고 취득함
◯ 국가 외의 상대방으로부터 공정가액 ₩1,000,000,000인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 받고 동시에 건물에 대하여 10년에 걸쳐 사용수익권 ₩500,000,000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기로 함
◯ 공정가액 ₩700,000,000인 무주토지를 발굴하여 자산에 등재함

① ₩1,400,000,000
② ₩1,500,000,000
③ ₩2,000,000,000
④ ₩2,500,0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가를 지급한 **유상 관리전환 토지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기부받은 건물은 공정가액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한 사용수익권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여기에 무주토지의 공정가액을 더하면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는 1,500,0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관리전환 받은 토지: 300,000,000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A부는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유상 관리전환에 해당하여 공정가액 300,000,000원**을 계상한다. B부가 계상하던 200,000,000원을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다.

2. 기부받은 건물: 500,000,000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 공정가액인 1,000,000,000원이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의 16. (무상취득)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할 건물의 장부가액은 1,0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원이다. 10년은 사용수익권의 제공기간이며, 취득 시점에는 제시된 사용수익권 500,000,000원 전액을 차감한다.

3. 발굴하여 등재한 무주토지: 700,000,000원
무주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주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므로, 현금 지출이 없더라도 700,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4.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위의 기준으로 평가한 뒤 합산한다.
300,000,000 + 500,000,000 + 700,000,000 = 1,500,00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말 현재 자본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주식은 영업개시와 동시에 발행하였으며, 그 이후 아직 배당을 한 적이 없다. 20×3년 초 ₩100,000의 배당을 선언하였다면 배당금 배분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 보통주(주당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80주)	₩400,000
○ 우선주A(배당률 10%, 비누적적·비참가적;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40주)	₩200,000
○ 우선주B(배당률 5%, 누적적·완전참가적;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80주)	₩400,000

① 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20,000 지급

② 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우선 지급 후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지급

③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30,000 지급

④ 우선주B 소유주에게 배당금 ₩50,000 지급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우선주B는 **누적적**이므로 20×1년과 20×2년의 우선배당금 합계 40,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완전참가적** 조건에 따른 잔여배당금 10,000원이 더해져 총배당금은 50,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우선배당금 계산: 우선배당금은 액면 기준 자본금에 약정 배당률을 곱한다. 우선주A의 연간 우선배당금은 200,000 × 10% = 20,000원이고, 우선주B는 400,000 × 5% = 20,000원이다.

누적 여부와 배당기간: 20×3년 초에 선언한 배당은 20×2년 말까지의 2개 연도를 대상으로 배분한다. 우선주B는 누적적이므로 20×1년의 미배당액을 포함하여 20,000 × 2 = 40,000원을 우선 배분한다. 우선주A는 **비누적적이므로 과거 미배당액을 이월하지 않아** 20×2년분 20,000원만 배분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두 우선주에 배분한 뒤 남는 금액은 100,000 − 40,000 − 20,000 = 40,000원이다.

보통주의 기본배당: 우선주B가 잔여배당에 참가하기 전에 보통주에도 B의 약정 배당률과 같은 5%를 배분한다. 보통주의 자본금은 400,000원이므로 기본배당금은 400,000 × 5% = 20,000원이다. 따라서 추가로 나눌 잔여배당금은 40,000 − 20,000 = 20,000원이다.

잔여배당금 배분: 우선주A는 비참가적이므로 추가 배당을 받지 않는다. 완전참가적 우선주B와 보통주만 **각 자본금에 비례하여 잔여배당에 참가**한다. 두 자본금이 각각 400,000원으로 같으므로 각자의 배분 비율은 $\frac{400,000}{400,000+400,000}=\frac{1}{2}$이다. 따라서 각각 $20,000\times\frac{1}{2}=10,000$원씩 추가로 배분한다.

최종 배당금: 보통주는 20,000 + 10,000 = 30,000원, 우선주A는 20,000원, 우선주B는 40,000 + 10,000 = 50,000원이다. 합계는 선언한 배당금 100,000원과 일치하며, 우선주B에 50,000원을 지급한다는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원가기준 소매재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기말 재고자산 원가는?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1,200	₩3,000
당기매입액	₩14,900	₩19,900
매출액		₩20,000
인상액		₩270
인상취소액		₩50
인하액		₩180
인하취소액		₩60
종업원할인		₩200

① ₩1,890

② ₩1,960

③ ₩2,086

④ ₩2,235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고를 제외한 당기 매입분**으로 원가율을 구하고, 원가기준이므로 순인하액도 반영한다. 원가율 74.5%를 기말재고 판매가 2,800원에 적용하면 기말재고 원가는 **2,086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매입분의 판매가 조정: 순인상액은 270 − 50 = 220원이고, 순인하액은 180 − 60 = 120원이다. 인상취소액은 인상액을 줄이고 인하취소액은 인하액을 줄인다. 따라서 조정된 당기 매입분의 판매가는 19,900 + 220 − 120 = 20,000원이다.

2. 원가율 계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므로 기말재고를 당기 매입분의 원가율로 평가한다. 따라서 원가율의 분자와 분모에서 **기초재고 원가 1,200원과 판매가 3,000원을 모두 제외**한다. 또한 원가기준 소매재고법이므로 분모에 순인상액뿐 아니라 순인하액도 반영한다. 원가율은 $\frac{14,900}{20,000} \times 100 = 74.5\%$이다.

3. 기말재고 판매가 계산: 판매가능한 재고의 판매가에는 기초재고를 포함하므로 3,000 + 20,000 = 23,000원이다.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상품도 재고에서 빠져나갔으므로, 그 상품을 판매가 기준으로 차감하려면 매출액에 **종업원할인액 200원을 더해** 차감한다. 기말재고 판매가는 23,000 − 20,000 − 200 = 2,800원이다. 종업원할인은 재고 전체의 표시가격을 바꾸는 인하액과 달리 원가율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4. 기말재고 원가 계산: 판매가로 구한 잔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원가로 환산한다. 기말재고 원가는 2,800 × 74.5% = 2,086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100,00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1,000,000의 설비자산을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설비자산을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정부에 상환할 의무가 없다. 20×3년 4월 1일 동 자산을 ₩620,000에 처분한다면 이때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처분손실 ₩10,000

② 처분이익 ₩10,000

③ 처분손실 ₩80,000

④ 처분이익 ₩8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8개월 감가상각 후의 **순장부금액은 630,000원**이다. 처분대가 620,000원이 이보다 10,000원 적으므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며, 6개월 이상 사용했으므로 보조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정부보조금 반영: 정부보조금을 **설비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보조금 차감 후 금액은 1,000,000 − 100,000 = 900,000원이다.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이 보조금을 처분 시 정부에 돌려주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2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20×2년 12개월, 20×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로, 처분일까지의 사용기간은 **총 18개월**이다. 잔존가치가 0원이고 정액법을 적용하므로 보조금 차감 후 금액 900,000원을 내용연수 5년에 걸쳐 배분한다. 연간 순감가상각비는 $\frac{900,000}{5} = 180,000$원이고, 18개월간 누적액은 $180,000 \cdot \frac{18}{12} = 270,000$원이다. 보조금의 상환조건인 6개월은 감가상각 기간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다.

처분 시 순장부금액: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보조금 차감 후 금액에서 누적 순감가상각액을 빼면 된다. 순장부금액은 900,000 − 270,000 = 630,000원이다.

처분손익: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처분 시 순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620,000 − 630,000 = −10,000원이므로 처분손실 10,000원이며, ①에 해당한다.

NoteBase